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6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김남희 · 장종태
박지원 · 이수진 · 김 윤
이주희 · 최혁진 · 정혜경
김교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,707개에서 2024년 27,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,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며,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「화장품법」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.

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.

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,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

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5조의2 신설 등).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,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영업자 등의 교육)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판매업자”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(이하 “화장품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(이하 이 조에서 “판매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전에 미리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의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

하는 자가 천재지변, 본인의 질병·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,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대신 화장품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이하 “영업자”라 한다)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·제도에 관한 교육(이하 “화장품제도교육”이라 한다)과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화장품제도교육 및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,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화장품제도교육 및 화장품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제도교육 및 화장품안전교육의 실시 기관, 내용,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제5조의2제2항”을 “제5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의3(중

전의 제6호의2) 중 “제5조의2제1항”을 “제5조의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의4(중전의 제6호의3) 중 “제5조의2제2항”을 “제5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6의2.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1호의2 중 “제5조의2제1항”을 “제5조의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3 중 “제5조의2제2항”을 “제5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 제40조제1항제4호 중 “제5조제7항”을 “제5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의3(중전의 제4호의2) 중 “제5조제8항”을 “제5조의2제5항”으로 한다.

4의2.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업 전 화장품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중전의 제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 및 그 이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

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
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, 내용,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5조의2(영업자 등의 교육) ①

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판매업자”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(이하 “화장품 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(이하 이 조에서 “판매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전에 미리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의 화장품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, 본인의 질병·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,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대신 화장품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이하 “영업자”라 한다)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·제도에 관한 교육(이하 “화장품제도교육”이라 한다)과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화장품제도교

	<u>육 및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,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화장품제도교육 및 화장품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</u> <u>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제도교육 및 화장품안전교육의 실시 기관, 내용,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/u>
제5조의2(위해화장품의 회수) (생략)	제5조의3(위해화장품의 회수) (현행 제5조의2와 같음)
제23조의2(위해화장품의 공표) ①	제23조의2(위해화장품의 공표) ①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	1. 제5조의3제2항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한 경우	-----
6의3.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6의4. 제5조의3제2항----- ----- -----
8. ~ 14. (생략)	8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3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	1의2. 제5조의3제1항----- --
1의3.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	1의3. 제5조의3제2항----- 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40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.
1의2. ~ 3의2. (생략)	1의2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	4. 제5조의2제1항----- -----
<신설>	4의2.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4의2.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	4의3. 제5조의2제5항----- -----
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